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3월 1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대 표 이 사 : 김이을 (인)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21(전민동)

(전 화) 042-365-7500

내부회계관리자 : 전략기획부문 부사장 이성대

(전 화) 042-365-750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 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본 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가 작성 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회사자산의 보호, 부정과 오류의 사전예방과 적시발견,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기록 및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시의적절한 작성을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 2. "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3. " 내부회계관리자" 라 함은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제2장 내부회계의 관리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 /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① 회계정보의 식별 / 측정 / 분류 / 기록 및 보고 등회계정보처리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② 회계정보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은 매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회계정보의 기록 및 보고】① 회계정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록되어 야 한다.

- 1. 모든 거래는 실재로 발생하여야 한다.
- 2. 모든 거래는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 3. 모든 거래는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 4. 모든 거래는 적시에 기록되고 적정한 기간에 귀속되어야 한다.
- 5. 모든 거래는 제5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다만 전표의 작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명칭과 그 운용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회계정보는 현업부서에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현업부 서장의 승인을 얻어 기록되어야 한다.
- ③ 현업부서에서 기록된 회계정보는 회계담당부서에서 회계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어야 한다.
- ④ 회계담당부서장은 기록된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양식 및 보고시기는 회사가 정한 회계규정에 따른다.
- ⑤ 회계정보를 외부공시하는 경우 공시담당자는 회계담당부서장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수정】① 회계담당부서는 현업부서에서 기록된 회계정보의 확정시 회계정보가 제5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록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발견된 오류는 회계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제5조에 근거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계담당부서장은 수정내용을 월별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기록된 회계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시기 및 점검대상은 회사가 정한 회계규정에 따른다.
- 1. 회계정보가 제5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절히 기록되었는지 여부
- 2. 회계정보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를 취하여 기록되었는지 여부
- 3. 외부공시된 회계정보가 제6조 제5항에 따른 승인절차를 취하여 공시되었는지 여부
- 4. 제3항에서 보고 받은 수정내용이 제5조에 따라 적절히 수정처리 되었는지 여부
- ③ 제2항의 점검결과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기록된 회계정보는 즉시 제5조에 따라 수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회계장부의 관리 및 통제】① 회사는 회계정보를 기록 / 보관하는 회계장부(전표,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회계정보처리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회계장부"라 한다)를 상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보존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 /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회계장부의 위조 / 변조 및 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통제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 1. 모든 회계정보는 회계정보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2. 회계정보의 확정 및 수정은 회계담당부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3. 회계장부에의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 4.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경비, 보안 등의 접근통제와 방화시설, 보험가입, 자료의 백업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 제9조【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① 회계정보의 작성 / 공시와 관련한 임 /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규정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관련법령과 사규 등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상근이사로 한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 ③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해야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④ 제3항의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담당부서의 내부회계관리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고,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 이하 같다)에게 이 규정에 따른 운용실태에 관해 보고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직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로 작성하여 대면 보고해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4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계획의 실시 및 성과평가 반영】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반영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 관리할수 있도록 주기적인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1. 통제담당자 및 통제책임자 : 연 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
- 2. 내부회계담당자(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 포함) : 분기 1회 이상 내부통제 교육
- 3.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 등 관련 임원 : 연 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
-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통제기술서에 정의하고 운영실태 점검 시 평가한다.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통제책임자의 적격성 평가는 인사부서에서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담당자, 내부회계평가자 등의 통제 수행인원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매운영 평가 시마다 수행하고 그 근거를 유지한다.
- ④ 회사는 아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회사의 인사규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관련인원	감점요인	감점			교육	
- 원인인권 -	9970) 기점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이수
대표자		미비점 미 발생시 - +3 -	-1	-3	-5	-2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평가, 감사위원회, 감사인의 평가시 미비점 발생시		-1	-3	-5	-2
내부회계및통제담당자	감사인의 평가시 미미점 알쟁시		-1	-3	-5	-2

제11조【내부신고의 운영】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를 운영한다.

-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신고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내부신고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제 3장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따라 운영 한다)"에서 정한다.

제12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시 처리절차】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 / 직원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 / 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요청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취약부분 개선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 / 직원은 상급자로부터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기록 / 공시를 지시받는 경우 지체없이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당해 행위 및 지시가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① 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 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 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감사
- 4.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14조【제정 및 개정】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하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이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위반시 제재사항】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임 /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 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 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 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제16조【규정의 제 / 개정 및 세부사항】① 이 규정의 제 /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이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_	_	_	_

(3) 관리 · 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책임자	직책	담당업무	저히버를	
또는 부서	성명	식식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전화번호
감사위원회	송중호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에 대한 심사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	
이사회	김이을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운영 실태 보고	회사 총괄	042-365-7504
전략기획부문	이성대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총괄	경영관리업무 총괄 전략기획부문장	042-303-7304
경영기획팀	전봉기	내부통제책임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	경영기획 총괄 경영기획팀장	

(4)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المراجاء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내부회계담당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원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 100)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감사위원회	3	2	1	50%	180
	경영기획팀	5	5	_	_	117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ストテル	저희	저히	ミコルにたてたて	경력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관리자	이성대	042-365-7509		15년	15년	4시간	12시간
내부통제책임자	전봉기	042-365-7504	_	14년	14년	4시간	12시간
내부회계담당자	황상민	042-365-7913	_	14년	14년	4시간	12시간

⁽주) 경력은 당 회사에서의 근무연수와 회계관련 경력을 기재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고
2021.02.08	김이을	첨부 참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_
2021.03.24 (주주총회 예정)	김이을	첨부 참조	주주총회	_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주)세트렉아이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 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리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 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 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 5 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1월 28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 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 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 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명성

• 운영실태 평가현황

2021년 1월 28일

내부회계관리자 이성대 (인)

대 표 이 사 김이율 (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 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고
2021.03.08	송중호 이예모 이성대	첨부 참조	_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2020년 사업면도)

주식회사 써트렉아이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희계관리체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정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 제 5 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내무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3월 8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 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 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1년 3월 8일

감사 위 월 회 감사 위원장 송 중 호 (인)

감사 위원 이에모(인)

감사 위원 이성대(원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안진회계법인)

구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 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 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 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 습니다.	_	_	_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_	_	_	_

Deloitte.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서울시영동요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빌딩 9층 (07326)

Tel: +8.2 (2) 6676 1000 Fax: +82 (2) 6674 2114 www.deloitteaniin.co.kr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제트레이이 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쒜트랙아이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운영실해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해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쒜트랙아이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대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해 보고서에서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해평가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대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규정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록레'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대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함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사를 위하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산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대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Delay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ayte Touche Tohnob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quarantee ("DTRL"), it anested in member firms, and thair related entitles, DTRL (also referred to an "Delayte Caboat") does not provide services of dente. Please see was delayte, powerful per unit of dente. Please see was delayte, combridge on the provide services of dente. Please see was delayte, combridge on the per more source or delayte.

Delotic Teachs Tohmstry Limited is a private company Imited by guarantee incorporated in England & Wales under company number 07271800, anothe registered office is No Heuse, 1 Little New Street, London, ECAs, 378, United Kingdom.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1

Deloitte.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개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외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주정시에 는 상항의 변화 혹은 절차나 경찍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6장 '중소기 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 나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대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 는 주식회사 의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2